

2014년(제3회) 변호사시험 일시·장소 및
응시자준수사항 공고

1. 시험일자 : 2014년 1월 3일(금) ~ 1월 7일(화), 4일간(1월 5일 : 휴식일)

2.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

| 시험일자 |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| | | | | 입실시간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| 시험과목 | 오전 | | 오후 | | |
| | | 시간 | 문형(배점) | 시간 | 문형(배점) | |
| 1월 3일 (금) | 공법 | 10:00-11:10 | 선택형(100점) | 13:30-15:30 17:00-19:00 | 사례형(200점) 기록형(100점) | - 오전시험 : 09:25 - 오후시험 : 시험시작 35분 전 ※ 시험실개방 08:00 |
| 1월 4일 (토) | 형사법 | 10:00-11:10 | 선택형(100점) | 13:30-15:30 17:00-19:00 | 사례형(200점) 기록형(100점) | |
| 1월 5일 (일) | 휴식일 | | | | | |
| 1월 6일 (월) | 민사법 | 10:00-12:00 | 선택형(175점) | 14:30-17:30 | 기록형(175점) | |
| 1월 7일 (화) | 민사법 전문적법 률분야에 관한과목 (택1) | 10:00-13:30 | 민사법 사례형(350점) | 16:00-18:00 | 전문적법률분야 에 관한과목(택1) 사례형(160점) | |

3. 시험장소

| 응시표 좌석번호 | 시험장소 | | 소재지 |
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|
| 건국대001~건국대476 | 건국대학교 | 상허연구원 |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※ 지하철 2호선·7호선건대입구역 |
| 고려대001~고려대408 | 고려대학교 | 법학관(신관) |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※ 지하철 6호선 안암역 |
| 연세대001~연세대341 | 연세대학교 | 백양관 |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※ 지하철 2호선 신촌역 |
| 한양대001~한양대473 | 한양대학교 | 제1공학관 |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※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|
| 충남대001~충남대734 | 충남대학교 | 백마교양교육관 |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 ※ 지하철 1호선 유성온천역 (택시 또는 버스 이용) |

※ 본인의 시험장소 확인방법 : 2013. 12. 5.(09:00) ~ 2014. 1. 7. 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(<http://moj.uwayapply.com/>)를 통해 응시표 출력 → 본인의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

예) 좌석번호란에 “건국대063”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소는 건국대학교 상허연구원(위 표 참조)이며,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“응시자 시험실 배치표”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, 해당 좌석에 앉으면 됩니다.

☞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(단,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),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랍니다.

4. 응시자준수사항 등

가. 변호사시험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.

나. 시험실 입실 및 시험시작 전

○ 법무부는 시험실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(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 됨),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.

-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,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, 필기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5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.
-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지정된 시간(시험시작 5분전)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할 수 없고, 그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기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첫 시험시간의 지정된 시간(시험시작 5분전)에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됩니다.
- ※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더라도 부정행위를 한 사람, 범조윤리시험에 불합격한 사람 또는 한 교시라도 결시한 사람 등 시험의 불합격이 명백한 사람의 경우에는 채점하지 않고 불합격 결정을 합니다.
- 답안지에 수험번호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.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,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.
-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,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.

다. 시험시간 중

-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,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(포스트-잇, 메모지, 책받침 등 포함)을 소지할 수 없으며,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.(위 기기를 시계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)
 -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.
 - ※ 단, 민사법 기록형·사례형 시험시작 후 2시간 경과 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.(시험 종료 10분 전까지만 사용 가능)
- 라. 선택형 답안지 작성 시
- 응시자는 문제의 명시적·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·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택해야 합니다.

- 답안지는 반드시 “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”(사인펜에 ‘컴퓨터용’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)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.
- 일단 표기한 답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. 수정액·수정테이프·지우개를 사용하거나 칼로 긁는 등으로 답안을 정정하면 그 문항은 틀린 것으로 처리됩니다.
- ※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
마. 논술형 답안지 작성 시

- 사인펜이나 연필은 사용할 수 없으며,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
- 답안은 반드시 문제번호에 대한 해당 답안지 내에만 작성하여야 하며, 각 문의 답안지를 바꾸어 작성하는 등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그 답안은 영점 처리합니다.
- 답안지에는 문제번호만 기재하고 문제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, 답안 내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.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, 수정액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논술형 시험에 제공되는 시험용 법전은 그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, 4일 동안 사용되므로 다른 사용자를 위하여 낙서나 줄긋기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시험용 법전에는 ‘포스트-잇’ 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- ※ 시험용 법전은 시험기간 중에는 사용 후 반환하여야 하며 임의로 가져갈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바. 시험종료 시

- 시험시간 중 답안지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,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.
-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합니다.